

제 1097 호
1985.5.2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임 모 인
 편집인 : 공 보 관 조 남 인
 전 화 : 731-6111-3
 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 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	
제 2004 호 :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	3
◎ 고 시	
제 336 호 : 도시공원시설사용 사용료고시	5
제 337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	7
제 338 호 : 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 시행허가고시	8
제 339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	9
제 340 호 : 을지로 2 가구역제 10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10
제 341 호 : 원서근린공원조성계획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	13
◎ 공 고	
제 310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	15

공 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099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5. 5. 22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

◎서울특별시 조례제 2004 호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공 원 입 장 료

(별표 1)

공원별	사 용 기 준	금액(원)	비 고
일반공원	어 른 1회당	200	○ 단체는 기본요율의 30%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음
	청소년 "	150	
	어린이 "	100	
어린이대공원	어 른 1회당	900	○ 조기 산책의 경우는 월당 공원 입장료의 10일분을 정수함
	청소년 "	300	
	어린이 "	150	
서울대공원	어 른 1회당	1,000	
	청소년 "	800	
	어린이 "	500	

주) ○ 어린이 : 만 7세이상 12세 이하의 자 (다만 유희 및 운동시설 사용료의 경우는 만 4세이상 12세이하의 자로함)

○ 청소년 : 만 13세이상 18세이하의자
 ○ 어 른 : 어린이, 청소년 및 만 6세이하의자 이외의 자
 ○ 단 체 :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

공 원 및 공 원 시 설 사 용 료					
공원별	종 별	사 용 기 준	금 액 (원)	비 고	
공 통	운동장사용	1 회 3.3 꺾 당	15		
	사진촬영 (상시영리행위)	1 인 1 년 당	110,000		
	영화촬영	주간 1 회 당	55,000	야간은 주간의 2 배	
	녹 화	1 시간 당	11,000		
		초과시간 당	5,500		
	유 회 시 설 운 동 시 설 기 타 시 설	인근시설 사용료의 90%이내 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함 단, 사유지상 민자시설 사용료 는 인근시설 사용료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장 이 승인함			○ 어린이 수영장은 관리 운영비 범위내서 정함
서울대 공 원	돌고래쇼장 관람료	어 른 1 회 당 청소년 " " 어린이 " "	300 200 100		
	무궤도 열차	어 른 1 회 당 청소년 " " 어린이 " "	400 300 200		
	수하물보관	1 일 1 회 당	300	초과 1 일 당 300 원	
	주차장사용	대 형 1 회 당 소 형 " "	1,070 500		
	어린이 대공원	야외음악당 사용료	주간 1 회 당	33,000	야간은 주간의 2 배
	남 산 공 원	식물원 입장료	어 른 1 회 당 청소년 " " 어린이 " "	200 100 50	
차량 통행료		버스, 대형 화물 승용, 마이크로버스 이륜, 소형 화물	650 450 250		
전망대 입장		어 른 1 회 당 청소년 " " 어린이 " "	1,100 750 750	부가가치세 별도	

고 시

표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
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36 호

도시공원시설사용, 사용료고시

1985. 5. 22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6 조 별

서울특별시 장

도 시 공 원 시 설 사 용 료

종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
운	탁구장사용료	단 식 : 어른 30분당	750	
		" : 청소년, 어린이	550	
동	서울대공원 스케이 트장 사용료	부 식 : 어른 30분당	900	
		" : 청소년, 어린이	700	
시	스케이트장사용료	어 른 : 1회입장에 대하여	900	
		청 소 년 : " "	700	
설	실내정구장사용료	어 린 이 : " "	500	
		스케이트대여 : 1회에 대하여	1,000	
시	돌라스케이트장 사용료	" 날같이 : " "	500	
		어 른 : 1회에 대하여	450	
설	실외정구장사용료	청 소 년 : " "	400	
		어 린 이 : " "	350	
시	장안평수영장사용료	어 른 : 1시간당	450	
		청 소 년 : " "	400	
설	실내정구장사용료	어 린 이 : " "	350	
		평 일 : 면당 1시간	3,000	
시	실외정구장사용료	토, 일, 공휴일 : "	4,000	
		평 일 : 면당 1시간	800	
설	장안평수영장사용료	토, 일, 공휴일 : "	1,500	
		어 른 1회에 대하여	1,000	
시	장안평수영장사용료	청 소 년 " "	800	
		어 린 이 " "	500	

종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	
운동 시설	어린이수영장사용료	1 회에 대하여	200		
	수영장사용료	어른 1 회에 대하여	1,400		
		청소년	"	1,000	
		어린이	"	800	
보트장사용료	2 인승 : 30 분당	1,100			
	3 인승 : "	1,500			
유 회	88 열차	어 른 : 1 회에 대하여	1,100	쿠폰사용시 10%할인	
		청소년 :	900		
		어린이 :	600		
회	해 적 선	어 른 : 1 회에 대하여	700	"	
		청소년 :	550		
		어린이 :	400		
회	대관람차	어 른 : 1 회에 대하여	600	"	
		청소년 :	400		
		어린이 :	300		
회	전자전투기 하늘차	어 른 : 1 회에 대하여	500	"	
		청소년 :	350		
		어린이 :	200		
회	다람쥐통 오토바이	어 른 : 1 회에 대하여	400	"	
		청소년 :	300		
		어린이 :	200		
회	양 궁	어 른 : 1 회에 대하여	400	"	
		청소년 :	300		
		어린이 :	200		
회	두꺼비차	어 른 : 1 회에 대하여	350	"	
		청소년 :	300		
		어린이 :	200		
회	미니레일, 도깨비집	어 른 : 1 회에 대하여	300	"	
		청소년 :	250		
		어린이 :	200		

종별	시 설 명	사 용 구 분	금 액	비 고
유	팽이놀이, 이층목마 요마기차	어 른: 1 회에 대하여	300	쿠폰사용시 10%할인
		청소년:	200	
		어린이:	200	
회	회전킴, 요술집 바즈카포, 아기차	어 른: 1 회에 대하여	300	"
		청소년:	200	
		어린이:	150	
시	과학놀이 뱃메리카, 아폴로의 자, 비행기	1 회당:	100	"
		어 른: 1 회에 대하여	300	
		청소년:	200	
실	회전목마	어 른: 1 회에 대하여	250	"
		청소년:	200	
		어린이:	150	
체	유 모 차	1 일 1 회당	800	"
		조 랑 말	1 회당 (코스)	
한	정 구 장 축구장, 야구장	면당 1 회사용 (1 시간)	300	단체누점사용시 적 용
		면당 1 회사용 (2 시간)	3,000	
		배구장, 농구장	1,100	
공	원 민	배드민턴장	600	"
기	타	어 른: 1 회에 대하여	200	"
		청소년:	150	
		어린이:	100	
시	안의사기념관	어 른: 1 회에 대하여	200	"
		청소년:	150	
		어린이:	100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37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

거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
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5. 22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
2. 사업주체 : 한국통신공사 을지전신전화국 주택조합 조합장 차진판
중구 을지로6가 58-5
3. 주요변경 승인 내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위치	강남구역삼동 134-10의 26 필지	강남구역삼동 134-10의 28 필지
면적	20,611.725㎡	21,048.8㎡
규모	아파트3동 300세대	아파트2동 390세대
건축연면적	32,262.53㎡	전용면적 84,825㎡ (90세대중) 41,371.35㎡
사업기간	'85.1-'85.12	'85.1-'86.3.31
사업비	10,528,000천원	13,959,000천원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38 호

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52 호(84.11.12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, 당시 공고 제 227 호(85.4.8)로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에 따른 서류공람공고한 가스공급 설비에 대하여, 동부지내 설비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연료과와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5.22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고척동 66-2 일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
- 다. 사업시행면적 : 11,757㎡ (건물총연면적 916.5㎡, 건축면적 360㎡)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: 종로구 신문로 2가 6번지
강남도시가스(주) 대표 정문원
- 마. 사업시행기간
허가일 - '86.6.30
- 바. 위치도 및 계획명면도
별첨(생략)
- 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성명 및 주소 : 별첨
- 아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,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
(#2)		사용할 토지의 조서			(단위: ㎡)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사용면적	토지소유자 주소·성명
구로구 고척동	66-2	천	63,308	9,496	'78.12.7 소유권 이전말소
" "	66-7	"	7,773	1,652	'78.12.7 소유권 이전말소
" "	71-2	"	2,301	292	'78.12.7 소유권 이전말소
" "	279-8	"	787	27	'78.12.11 소유권 말소
" 구로동	631-3	"	1,455	22	'78.12.7 소유권 말소
" "	631	"	10,388	268	'78.12.7 소유권 말소
계			86,012	11,757	

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339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외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 호(81.2.3)로 도시계획시설 (시외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)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동구 구의동 546-1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기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5.22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자: 서울동내문구용두동 33-1 (주)신대동 대표이사 정재문

나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 (시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)
사업명칭: 서울동부종합시외버스 정류장(터미널)

다. 사업시행규모
부지면적 - 36,704 ㎡
건축연면적 - 12,653.38 ㎡
(승하차장시설, 옥탑제외)

라. 시행자주소, 성명: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3-1
(주)신대동 대표이사 정재문

마. 사업기간: '85.5.10-'86.6.9

바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: 별첨(생략)

사. 사용할 토지: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46-1 일대
(토지 및 건물조서: 별첨)

아. 공사설계도서: 별첨 (도면생략)

첨 부: 토지조서

토 지 조 서				
지 번	지 역	지 구	면 적	소 유 자
성동구구의동 546-1	준주거지역	주차장정비지구 (자동차정류장 고시지역)	36,704.3 ㎡	서울특별시
<p>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340 호</p> <p>을지로2가구역제 10지구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332 호 (79.7.24) 로 사업시행인가되고 동 고시제 816 호 (84.12.31)로 변경인가된 을지</p>		<p>로2가 구역 제 10지구 재개발사업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8조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인 가하고 동법 제 16조 및 동법시 행령 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5.22 서울특별시 장</p>		
가. 변경인가내용				
구 분	기 정		변 경	
1. 사업의 명칭	을지로2가구역 제 10지구 재개발사업		변경없음	
2. 시행구역	중구을지로2가 9-1번지일대 (25필지)		을지로2가 9-1번지 일대 (28 필지)	
3. 시행면적	4,297 ㎡		4,857.9 ㎡	
4. 시행자	내외공업(주) 대표 김성우		변경없음	
5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중구을지로2가 9-1		"	
6. 시행기간	'79.7.24-'85.12.31		"	
7. 사업시행계획서	별첨 (생략)		"	
8. 건축계획				
대지면적	4,009.3 ㎡		"	
건폐율	40%		"	
용적율	635%		"	
층 수	지상 15층, 지하 3층		"	
주용도	업무 및 판매사업		"	
나. 변경사유: 공공용지 추가확보로 시행 구역 변경				

1) 수용또는사용할토지명세 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						
일련 번호	번		경			소 유 지
	지 번	지 목	지 적(㎡)	대 지(㎡)	공 공 요 지(㎡)	
1	을지로2가3-1	대지	735.2	735.2	-	내외홍업
2	" 3-2	"	13.2	13.2	-	"
3	" 4-2	"	30.1	30.1	-	"
4	" 7	"	168.6	168.6	-	"
5	" 8	"	264.5	264.5	-	"
6	을지로9-1	"	1,482.6	1,482.6	-	"
7	을지로2가9-2	"	9.9	9.9	-	"
8	" 9-3	"	9.9	2.9	-	동국제강
9	" 9-4	"	79.3	11.5	-	"
10	수하동50	"	4,998	4.3	-	"
11	" 64	"	112.4	4.1	108.3	개성상회
12	" 65-3	"	150.4	66.5	83.9	황회주
13	" 65-4	"	12.5	.	12.5	"
14	남대문로1가25-1	"	175.2	92.2	83	김명희
15	" 27-1	"	65.8	65.8	-	김영배·박계자
16	" 28-1	"	9.2	9.2	-	정만표·정환중
17	을지로2가5-1	"	569.9	569.9	-	동원산업
18	" 6	"	221.5	221.5	-	"
19	남대문로1가26-1	"	52.2	52.2	-	"
20	을지로2가1-3	도로	112.4	39.2	-	서울시
21	수하동63-3	"	238	3.7	-	"
22	남대문로1가48-4	"	561.4	7.2	-	"
23	" 75-1	"	129.9	41.9	-	"
24	" 25-3	"	27.4	27.4	-	국유
25	을지로2가6-1	"	4.3	4.3	-	"
26	수하동64-1	대지	142.1	81.4	-	"
소 계				4,009.3	287.7	
계			26필		4,297	

변 경 후						
지 번	지목	지적(㎡)	대지(㎡)	공공용지(㎡)	소유자	소유권의의관리자
을지로2가3-1	대지	735.2	735.2	-	내외공업	서울신탁은행(근저당)
" 3-2	"	13.2	13.2	-	"	한국의환은행(근저당)
" 4-2	"	30.1	30.1	-	"	금성투자금융(근저당)
" 7	"	163.6	168.6	-	"	한일은행(근저당)
" 8	"	264.5	264.5	-	"	한국상업은행(근저당)
" 9-1	"	1,482.6	1,482.6	-	"	중앙투자금융(근저당)
" 9-2	"	9.9	9.9	-	"	"
" 9-12	"	2.9	2.9	-	"	한국의환은행(근저당)
" 9-13	"	11.5	11.5	-	"	한일은행(근저당)
수하동50-6	"	4.3	4.3	-	"	금성투자금융(근저당)
" 64	"	112.4	4.1	108.3	"	"
" 65-3	"	150.4	66.5	83.9	"	"
" 65-4	"	12.5		12.5	"	"
남대문로1가25-1	"	175.2	92.2	83	"	"
" 27-1	"	65.8	65.8	-	"	"
" 28-1	"	9.2	9.2	-	"	"
" 5-1	"	569.9	569.9	-	동원산업	"
" 6	"	221.5	221.5	-	"	"
" 26-1	"	52.2	52.2	-	"	"
" 1-3	도로	112.4	39.2		서울시	"
수하동63-3	"	238	3.7	-	"	"
남대문로1가48-4	"	561.4	7.2	-	"	"
" 75-1	"	129.9	41.9		"	"
" 25-3	"	27.4	27.4		국(건설부)	"
을지로2가6-1	"	4.3	4.3		국(")	"
수하동64-1	"	29	29		국(재무부)	"
" 64-2	대지	52.4	52.4		국(")	"
" 27-5	"	128.5		128.5	이영준·이대영	"
삼각동111-1	"	478.4		478.4	이기준·정금순	"
소 계			4,009.3	894.6		
계		29필	4,903.9			

법제 36조의 지장물등의 명세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용도	구조	지적(㎡)	소유자	
						주소	성명
1	중구삼각동	111-1	근린시설	목조와즙	89.12	중로구청운동 57-28 은평구불광동 436-8	이영준 이대영
2	"	"	부속건물	"	99.04	"	"
3	"	"	부속건물	"	50.98	"	"
4	"	"	부속건물	"	15.04	"	"
5	"	"	부속건물	"	19.44	"	"
6	"	"	부속건물	"	27.40	"	"
합계			301.02 ㎡중 일부				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341 호

원서근린공원 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
및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73 호 ('85.2.16)로 결정된 원서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 조와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

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시는 서울시청 공원과와 중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5. 5. 22

서울특별시장

- 원서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조서 : 별첨
- 관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. 끝.

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

* 공원조성계획 총괄표

구분	시설내용	부지면적 (㎡)		비고	
		변경전	변경후		
총계		10,004.6	10,004.6 (100%)		
공원 시설	조경시설	퍼골라 1개소, 화단, 잔디밭	2,128	1,854	감 274
	휴양시설	산책로 220m, 정자목 1개소	710	1,155	증 445
	공원관리 시설	조명등 51개소, 휴지통 26개	52	52	변경없음
	편익시설	음수대 2개소, 경사로 2개소, 장의자 68개, 계단 6개소, 변소	580	374	감 206
	운동시설	다목적운동장 (놀이마당)	380	455	증 75
	소계		3,850 (38.8%)	3,890 (38.8%)	
녹지	잣나무외 26종 3,253주	6,154.6	6,114.6	묘목: 230주 관목: 2,994주 덩굴: 29주	

* 시설조서

구분	번호	시설명	위치	부지면적 (㎡)		비고
				변경전	변경후	
총계				10,004.6	10,004.6	
조경시설	1	옥외휴양시설	공원 서측 (대화마당)	1,568	1,294	감 274
	2	"	공원 남측 (만남마당)	315	315	변동없음
	3	옥외전시장	공원 동측 (전시마당)	245	245	"

구 분	번호	시 설 명	위 치	부 지 면 적 (㎡)		비 고
				변 경 전	변 경 후	
	소계			2,128	1,854	감 274
휴양시설	4	산책로, 보도	서북측 남측	430	695	증 265
	5	정자목, 가로공원		280	460	증 180
	소계			710	1,155	증 445
공원관리 시설	6	조명시설등		52	52	변동없음
편익시설	7	경사로, 변소 등		580	374	감 206
운동시설	8	다목적 운동장	놀이마당	380	455	증 75
기 타	9	녹 지		6,154.6	6,114.6	

공 고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10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, 하수도) 실시계획
공 랑 공 고

1. 건설부고시 제 198 호 ('72.4.7)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 192 ('75.11.24) 지적 고시된 암사동 607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(도로, 하수도) 실시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한다.

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

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.

가. 공람장소 : 강동구청 트목과

나. 공람기간 : '85.5.22 ~ '85.6.4
(14 일간)

1985. 5.22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개 요

1. 사업명 : 암사동 607 도로개설공사
2. 사업시행지 : 암사동 607 번지
3. 사업규모 : B = 15 m, L = 320 m
아스팔트포장 A = 26.7 a
하수도 D = 600 %, L = 320 m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로부터 1년
6. 기타사항 :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문의 바람.

토 지 중 서				
위 치	지 목	면 적	비 고	
암사동 608-62	전	1,387	강남구 방배동 725 방배 살호(아)바동 105 조원	
" " -64	대	12	강서구 화곡동 400-7 조진태	
" " -65	대	120	강남구 서초동 20-1 삼익(아) 7-602 이상윤	
" " -66	대	49	강서구 화곡동 400-75 윤병환	
" " -67	대	50	성동구 행당동 317-602 이상효	
" " -68	대	135	성동구 용봉동 265-10 이길임	
" " -69	대	13	강동구 암사동 449-1 한영채	
" " -33	대	149	" " 608-33 이은상	
" " -70	대	32	" " " -34 이홍천	
" " -71	대	8	" " " -3 김종배	
" " -71	대	36	인천시 북구 부개동 120 강용훈	
" " -73	대	41	강동구 암사동 607-1 김종해	
" " -74	대	101	" " 599 백창주	
" " -75	대	30	" " 607-1 김종해	
" " -76	대	31	" " 599 백창주	
" " -77	전	1,779	" " 607-36 정난복	
" " -37	대	126	" " 608-37 최전철	
" 606-10	대	252	마포구 동교동 203-54 정승화	
" " -11	대	226	" " " " "	
" " -14	대	6	동대문구 면목동 86-13 성정자	
" " -12	대	84	마포구 합정동 382-14 김대식	
지 장 발 조 서				
위 치	품 명	면 적	비 고	
암사동 608-2	버 석	1 단 86 (4 단 344)		
" " -54	호 박	1,239	암사동 608-1	김계승
" 606-11	"	226	" 607-3	김승조
" " -10	"	252	" " "	"